「군포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2021년 10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5호

군포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(관리비 선수금)

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비 선수금의 수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분양주택은 입주금 잔금을 수납할 때
2.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잔금을 수납할 때 <삭제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개 발 사 업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개 발 사 업 부 장 조 화 현
	직 위 성 명	개 발 기 획 팀 장 최 민 기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지 영 (3 9 0 - 7 7 8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관리비 선수금) ① 주택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수납하여야 한다.	**제27조(관리비 선수금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관리비 선수금의 수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분양주택은 입주금 잔금을 수납할 때	1. (현행과 같음)
2.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잔금을 수납할 때	2. <삭제>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❑ 공공주택 특별법

제50조(공공임대주택의 관리)

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(이하 "선수관리비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. <신설2019.4.30.>

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
제53조(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)

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다라 공공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(이하 "선수관리비"라 한다)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「공공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. <신설 2019.10.29.>

❑ 공공주택 관리법

제24조(관리비 예치금)

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(이하 "관리비예치금"이라 한다)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❑ 공공주택 관리법 시행령

제24조(관리비 예치금의 징수)

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.